

정책실명제 등록번호

2011 - 29

## - 2013년도 정책자료집 -

# 중소기업 인턴십



서울특별시  
젊은 기업, 젊은 청년  
중소기업 청년인턴십

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 
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이용방법

서울일자리  
플랫폼센터  
<http://job.seoul.go.kr>  
접속!

메인메뉴에서  
채용정보사업별  
클릭!

중소기업  
청년인턴  
참여기업공고  
클릭!



【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】

## 정책추진과정 비망록

정 책 명	중소기업 인턴십	총 소요기간 및 예산액	'13.2~12.31 11,097백만원
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</li> </ul> </li> <li>○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양한 인턴십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	
추진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진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3. 2. 26 : '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계획 수립</li> <li>- 2013. 3. 1~ :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 추진 및 관리</li> </ul> </li> </ul>		
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제진흥실장 : 최동윤</li> <li>○ 일자리기획단장 : 장혁재</li> <li>○ 창업취업지원과장 : 이방일</li> <li>○ 고용사업팀장 : 백종문(검사공무원)</li> <li>○ 담당자 : 김관호, 이효진, 박병수(감독공무원)</li> </ul>		
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	서울시인쇄산업협동조합,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, 한국고용정보원		
기타			
공개구분	공개		

# 정책자료집 수록내용

## (목 차)

1. 20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사업 추진계획 ..... 4
2.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계획 ..... 9
3. 2013년 중소기업 무역인턴십 운영계획 ..... 17
4. 2013년 중소기업 시니어인턴십 운영계획 ..... 30

문서번호	창업취업지원과-1816			
결재일자	2013.2.26.	시 민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주무관	창업취업지원과장	고용노동정책관
방침번호				경제진흥실장

'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계획

2013.2

**경제진흥실**  
(창업취업지원과)

## 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■ 노동인지 ■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■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 한국산업단지공단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
# '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 계획

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 및 고용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하고자 함

## I 성과 및 평가

### 1 '12년 추진실적(성과)

- 인턴십 등 다양한 고용지원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 해소
  - 각종 사업을 통해 2,122개 일자리 발굴 지원(목표 2,750명 대비 77%)  
(단위:명)

구 분	계	청년	무역	시니어	4대도시형
'12년 실적	2,122	1,498	106	117	401

- 미취업 청년들의 직장경력 형성으로 정규직 취업지원의 기틀 제공 등
- 전통적 4대 도시형 제조업에 대한 고용지원으로 도시형 사양산업 버팀목 역할
  - 인쇄, 의류·봉제, 귀금속, 기계분야 등 4대 도시형 제조업체에 일자리 제공(401개)

### 2 '12년 사업평가(반성)

- 구인(업무능력)·구직자(임금)간 기대수준 차이로 미스매칭 현상 지속
-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경영부담과 취업자의 인식 등으로 정규직전환 미비
  - 정규직 전환율(채용자 대비) : 60.0%('11년) → 55.1%('12년)
  - 기업에 채용승인을 4,024명 했으나 실제 채용은 1,721명으로 42.8%  
(단위:명)

구 분	계획 목표	참여기업 승인		최종선발 (채용)	채용비율	
		기업	인원		목표대비	승인대비
청년인턴	1,600	1,867	3,424	1,498	93.6%	43.8%
무역인턴	250	237	281	106	42.4%	37.7%
시니어인턴	500	202	319	117	63.8%	36.6%

⇒ '13년 일자리 확대 · 채용을 제고 · 고용안정성 확보 중점 추진

## II

# 추진방향 및 체계

### 1 추진방향

-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선하여 청년 등 미취업자의 고용시장 유입 적극 유도
-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위한 인턴십 참여기업 지원기준 개선
- 특화사업지역, 대학생 등 세분화하여 정책을 집중 지원

### 2 추진체계

#### 미취업자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

청년 미취업자  
중소기업  
취업지원 확대

특화산업지역  
집중지원

인턴십  
참여기업  
지원기준 개선

4대 도시형  
제조업  
고용지원 확대

#### ■ 국간기간전략사업 분야 인력채용 지원

- ▶ 취업자 직접 지원  
(월 275천원, 2년간)
- ▶ 2년 경과시 창업지원 연계

#### ■ G-Valley 소재 IT기업 등 지원

- ▶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계
- ▶ 대학생, 정규직, 12개월 지원(월120만원, 월 급여 160만원이상)

#### ■ 청년 인턴십 ■ 무역 인턴십 ■ 시니어 인턴십

- ▶ 지원기준 강화
- ▶ 자격요건 완화 등

#### ■ 인쇄, 의류봉제, 귀금속, 기계분야 고용지원

- ▶ 지원방법 개선  
(임금인상, 지원주기 등)

### Ⅲ

## 추진계획

⇒

일자리 3,450개

### 1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

⇒ 일자리 400개

#### ○ 현 실 태

-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조건이 낮고,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인력충원이 어려우나 국가기간 전략산업으로 매우 중요함

※ 국가 기간·전략산업 고용 비중 : 전체산업의 41.3%

(단위:천명)

구 분	전산업(A)	기간산업(B)	전략산업(C)	기간전략산업(D)	합 계 (E=B+C-D)
취업자	23,433	6,178	7,092	3,587	9,683
비 중	100%	26.4% (B/A)	30.3% (C/A)	15.3% (D/A)	<b>41.3%</b>

※ 출처 : 국가 기간·전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우선선정직종 훈련 수요조사 연구(고용노동부, 2009년)

p32 / D는 B,C 모두에 포함

#### ○ 추진방향

- 중소기업 청년 현장근로자 본인에게 취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적정임금을 보장하여, 자발적 취업 유도
- 중소기업의 국가기간 전략산업 인력난 해소 : '13년 제조업 시범실시
  - ▶ 단, 4대 도시형 제조업 분야 제외 (인쇄·의류봉제·귀금속·기계분야)
- 2년간 장기적 지원으로 기능기술을 익혀 경쟁력 제고
- 2년간 실무경력을 쌓은 청년취업자에게 창업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창업과 자립에 대한 비전 제시



## ○ 추진내용

- 지원근거 : 서울특별시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
 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개인에게 일정기간 취업지원금 지급
    - ▶ 국가산업의 기능기술분야 기업 및 인력난이 심한 기업중 소기업(상시근로자 5인 이상 ~ 50인 미만)
    - ▶ 2년간 지원금(월 275천원 / 총 660만원) 지급, 2년 경과시 청년창업지원 연계 추진
  - 지원대상 : 아래 업종 기업 취업청년(만 18세 ~ 29세, 총 400명)
    - ▶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: 식료품제조업 외 7 (별첨 1참조)
  - 지원절차
    - ▶ 표준산업분류(중분류) 8개 업종의 해당업체에서 신청(10일) ⇒ 참여기업 및 신청자 심사 및 승인(7일) ⇒ 협약 체결 및 서류제출 ⇒ 1개월 급여 지급후 일모아시스템으로 신청 ⇒ 확인후 취업자 본인통장으로 지급
- ※ 청년인턴 등 중복지원은 불가하고, 총10명 이내(상시근로자의 20%)에서 선택 지원

## ○ 추진일정

- 세부운영계획 수립 : '13.2월
-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: '13. 3~12월
- 사업참여 업체 현장실태 점검 : '13. 6월 ~11월(년2회)

## 2 특화산업지역 G-밸리 집중 지원 ⇒ 일자리 1,000개

### ○ 현 실 태

-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지역제한 없이 서울시 전체에 걸쳐 사업을 시행중이나 점차 사업참여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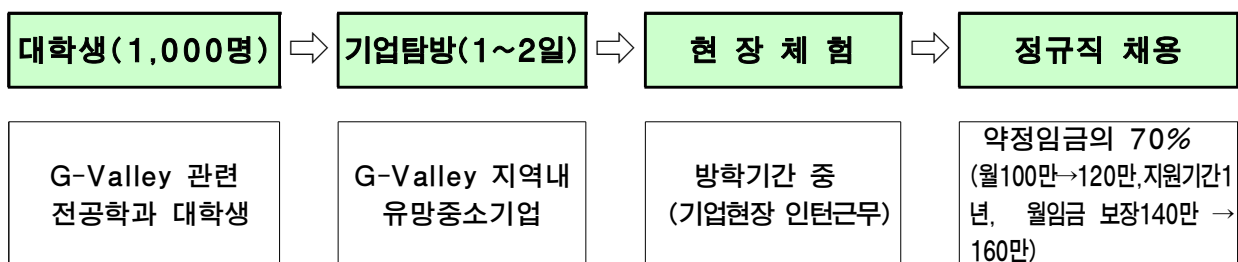
⇒ 산업화의 메카인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(G-밸리)를 특화하여 집중지원 및 일자리 창출 유도

### ○ 추진내용

【서울전역, 전업종, 일반청년 ⇒ 특정지역·업종·층(G-Valley, IT업종, 대학생)】

-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G-Valley(구로·금천) IT업종과 연계
  - ▶ G-Valley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협약체결(운영방법)
  - ▶ G-Valley내 상위 20%내 유망 우량기업(200~300개) 선정
  - ▶ 대학생(1,000명) IT업종관련 학과와 연계로 활성화

### ○ 추진절차



### ○ 추진일정

-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협약체결 : '13. 2월말 ~3월 초
- 참여기업체 및 대학생 수요조사 : '13. 3~5월
- 기업탐방 체험 및 대상자 선정 : '13. 6~8

**3 인턴십 지원기준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** ⇒ 일자리 총 1,550개

○ **현 실 태**

- 청년, 무역, 시니어 등 대상별로 다양한 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직자·구인기업간 눈높이로 사업이 정체되고 있음

▶ 청년 : 1,477명('11) ⇒ 1,498명('12), 무역 : 230명('11) ⇒ 106명('12), 시니어 : 452명('11) ⇒ 117명('12)

※ 중소기업 인턴십의 기업승인실적(11년 3,596명/ 12년 4,024명)대비 채용(11년 2,159명/12년 1,721명)  
(채용율 11년 60% / 12년 42.8%)

○ **개선내용**

-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인턴기간(6개월→3개월) 및 지원기간(10개월→12개월), 지원율(인턴 60%→50%, 정규직 50%→70%) 조정 등 개선

구 분		청년인턴		무역인턴		시니어인턴	
		지원기간	지원내용	지원기간	지원내용	지원기간	지원내용
개 선	인턴	3개월	약정급여의 50%	3개월	약정급여의 50%	3개월	약정급여의 50%
	정규직	9개월	약정급여의 70%	9개월	약정급여의 70%	9개월	약정급여의 70%
기 준	인턴	6개월	약정급여의 60%	6개월	약정급여의 60%	3개월	약정급여의 60%
	정규직	4개월	약정급여의 50%	4개월	약정급여의 50%	3개월	약정급여의 50%

※ 최대 월 100만원 지원, 월 급여 최소 140만원 이상 조건은 변동없음

- 무역인턴십 참여 자격기준 조정으로 채용의 유연성 확보
  - ▶ 무역전공, 외국어 일정수준 ⇒ 기업 자체기준 적용(자체 업무 적격자)
- 시니어인턴십 인턴 연령대(50대/60대) 구분 모집 폐지(50대 이상으로 통합)
- 참여업체의 채용기간 연장(15일 → 45일)으로 모집 승인인원 대비 채용비율 향상 유도(격월 모집공고)

○ **추진일정**

-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(청년인턴 4대 고용지원사업)과 협약 체결 : '13년 2월말~ 3월 초
-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: '13. 3월 ~

#### 4 4대 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지속추진

⇒ 일자리 500개

##### ○ 현 실 태

- 인쇄, 의료·봉제, 귀금속, 기계분야 등 4대 도시형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나,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난이 심화추세임

※ “10년 제조업 고용의 70%차지 : 38,264개 기업, 189천명  
(의류업체 32%, 기계22%, 인쇄10%, 귀금속 6%)

##### ○ 추진결과

- 12년도 목표/채용인원 : 400명/401명

※ 의료·봉제 184명(45.9%), 인쇄 168명(41.9%), 귀금속 28명(7.0%), 기계 21명(5.2%)

##### ○ 개선내용

- 취업자 임금인상, 지원회수 조정 등 지원방법 개선으로 사업 참여의욕 고취

▶ 취업자 보장임금 향상 : 월 100만원 이상 ⇒ 월 110만원 이상

▶ 고용보조금(기업, 1인당 최대 840만원/년) 지원주기 조정

· 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, 회당 180만원 4회 지원 ⇒ 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, 회당 140만원 6회 지원

▶ 취업장려금(신규 취업자, 1인당 최대 330만원/년) 지원주기 조정

· 3개월 경과시 마다 차등지원(30-50-100-150) ⇒ 2개월 경과시 마다 55만원씩 균등 지원

##### ○ 추진일정

-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: '13. 3월 ~

#### 5 직무향상교육 실시

⇒ 6,900명

##### ○ 교육내용 및 대상인원

- 시 사업 설명 및 고용노동법, 4대보험, 리더십 강의 : 1일 7시간

- 교육대상자 : 총 6,900명

· 인턴 및 취업자 3,450명, 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 3,450명

##### ○ 교육기관 선정방법

-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로 민간위탁 전문교육기관 선정 실시

## Ⅳ

### 소요예산

- 예산액 : 총 17,606백만원
  - 중소기업 청년인턴(고졸인턴)십 인건비 : 10,431백만원
  - 시니어인턴십 인건비 : 1,585백만원
  - 무역 인턴십 인건비 : 1,080백만원
  -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보조 인건비 : 3,347백만원
  -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인건비 : 970백만원
  - 인턴 직무향상교육비 : 152백만원
  - 홍보비 : 41백만원

## Ⅴ

### 향후 추진 일정

- 각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수립, 청년인턴십 및 4대 고용지원 사업 인턴운영기관 협약 체결 등 : '13. 2월
- 참여기업 모집·선정 및 채용자 선정 : '13. 3월~11월
  - '13년 3월부터 2개월 기간으로 모집 공고 : 총 5회 이상 실시
  - ※ 채용실적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1개월 기간으로 추가모집 실시
- 전문교육기관 선정 또는 자체 교육실시 : '13. 3월 ~ '14.2월

첨부 : 1.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제조업중 조례의 지원대상 업종  
2. 중소기업 인턴십사업 설문조사 결과

시 민

문서번호	창업취업지원과-1831
결재일자	2013.2.2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고용사업팀장	창업취업지원과장
협조		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## 2013년 『중소기업 청년인턴십』 운영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 업 비
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	
'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계획 【창업취업지원과-1816 (2013.2.26.)】	·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	· 특화산업지역- G밸리 대행	동의	10,431 백만원
	· 서울시인쇄정보 산업현동조합	· 인쇄분야 대행		

희망서울  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2013. 2월

경제진흥실  
(창업취업지원과)

# 2013년 「중소기업 청년인턴십」 운영계획

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「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」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.

## I 관련 근거

-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, 제7조(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)
- 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 계획 【창업취업지원과-1816(2013.2.26)】

## II 사업 개요

- 선발인원 : 1,800명
  - 특화산업지역 G-밸리 1,000명, 유망 중소기업 600명, 인쇄 200명,
    - ※ G-밸리 :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위탁운영
    - ※ 인쇄 :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위탁운영
- 지원기간 :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
  -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지원(인턴기간 포함 12개월 지원)
- 임 금 : 임금 1인당 월 140만원 이상
  - 시비 지원금 : 인턴 3개월▷약정급여의 50%, 정규직 9개월▷약정급여의 70%
  - ※ G-밸리 : 최대 월 120만원 + 기업 부담금 ⇒ 160만원 이상 임금 지급
  - ※ 일반기업 : 최대 월 100만원 + 기업 부담금 ⇒ 140만원 이상 임금 지급
- 참여기업 및 인턴 선발
  - 참여기업 선정 : 기존 참여기업 중 인센티브 기업, 신규 유망 중소기업 우선선정

- 인턴 공개모집 : 인턴희망자가 기업선택, 기업에서 면접후 채용

### III 추진 현황

#### ● 2011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추진현황

- 운영실적 : 채용인원 1,477명(인턴수료 1,113명, 정규직 전환 886명)
- 정규직 전환율 : 인턴 수료대비 79.6%, 채용대비 59.9%

#### ● 2012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추진현황

- 운영실적 : 채용인원 1,498명(인턴수료 : 493명, 정규직 전환 440명)
- 정규직 전환율 : 인턴 수료대비 89.2%('12. 1. 31 현재)

※ 2012년 청년인턴십 6차모집 인턴 종료시점인 '13.1월말 최종실적 집계

### IV 지원 대상

#### 기업

#### ● 대상

-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,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

#### ● 선발분야

-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우선지원 중소기업
  - 유망 중소기업 : 신성장동력산업(IT융합, 디지털콘텐츠, 비즈니스서비스, 디자인·패션, 금융, 관광·마이스, 바이오·메디컬 등)
  - 인센티브 기업 : 전년도 참여기업 중 정규직전환율 50%이상, 2명이상 정규직 채용기업(1년이상 고용유지)
- 인센티브, 유망중소기업(신성장동력산업) 및 전통제조업 모집결과 업체가 미달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 선정



### 제 외 대 상

- 서울시 청년인턴십, 무역인턴, 시니어인턴십 등 협약위반 및 제재대상 기업
-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파견 및 공급 업체(용역업체 포함)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(보험회사 등)
- 학원 및 숙박음식업 종사업체(다만, 호텔업·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
- 기타 서울사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
## 인 턴

### ● 대 상

-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**만 18세 이상 35세 이하** 청년 미취업자  
(1977. 1. 1 이후 출생한 자, 단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포함)
- 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대군인 등의 경우 상한 연령 연장  
⇒ 군복무기간 1년미만 : 1세,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, 2년이상 : 3세 연장

### 제 외 대 상

- 고등학교, 대학교 재학생(졸업예정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·야간학교는 예외)
-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
## V 모 집 및 채 용

### ● 참여기업 및 인턴신청자 모집

- 참여기업 : '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'를 작성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
(<http://job.seoul.go.kr>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- 인턴신청자 : '인턴 신청서'를 작성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
(<http://job.seoul.go.kr>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
### ● 적격여부 확인

- 인턴신청자 적격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,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해 조회·확인

### ● 인턴 채용

- 상시근로자수 20%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채용
  - 정규직전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(최대 5명)
    - ⇒ 2012년도 인턴을 2명이상 채용한 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이 50% 이상인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의 20%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추가 지원 가능
-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 : 상시근로자 30%이내 1명 추가 지원
- 인턴이 기업을 선택 지원하여 해당기업에서 면접 실시 후 채용

## VI 인턴약정 체결 및 인턴 관리

### ● 인턴약정 체결

- 체결주체 : 참여기업 및 인턴
- 체결시기 : 참여기업에서 인턴 채용 결정 후
- 체결방법 : 표준 인턴약정서(별첨 2)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체결
- 약정내용 : 근로시간, 장소, 임금 등 근로조건

### ●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

- 인턴 법적지위 :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
- 보험적용 : 참여기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턴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 의무화

### ● 인턴 급여지급

- 급여의 명시 :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
- 급여 선지급 : 참여기업은 서울시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

### ● 업무상 재해 인정

-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
- 다만,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 자동 해지

### ● 근로조건

- 근무시간 :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,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

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 권장

- 가산임금 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
-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: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

### ● 인턴 교육, 배치 및 운영

- 인턴교육 : 참여기업은 인턴의 근무기간 중 서울시가 교육훈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인턴 직무능력 향상교육(1일 7시간)을 의무 이수토록 함
- 배치 및 근무관리 : 참여기업은 인턴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 하고, 인턴의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

## VII 인턴지원협약 체결

### ● 인턴지원협약 체결

- 체결주체 : 서울시 및 참여기업
- 체결시기 : 참여기업과 인턴간 인턴약정서 체결 후
- 체결방법 : 표준 인턴지원협약서(별첨 3)를 준거로 체결
- 협약내용 :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,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

### ● 협약의 해지

- 참여기업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-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## VIII 정 규 직 전 환

- 전환기한 :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

- 정규직 인정범위 :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

※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권장

- 정규직 전환 통보 및 기타 인사관리

- 참여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경우,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서울시에 제출
- 정규직 채용이후의 인사관리는 근로계약, 당해 실시기업의 취업규칙,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

## IX 지원금 지급

- 인턴기간 중 지원

- 지원액 : 인턴 3개월▷약정급여의 50%, 정규직 9개월▷약정급여의 70%
- ※ G-밸리 : 최대 월 120만원 + 기업 부담금 ⇒ 160만원 이상 임금 지급
- ※ 일반기업 : 최대 월 100만원 + 기업 부담금 ⇒ 140만원 이상 임금 지급
- 지원기간 :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
- 지원방법 : 서울시에서 직접 해당기업에 지급

- 정규직 채용시 추가지원

- 지원기간 : 인턴기간 종료 이후 9개월간

## X 사 후 관 리

- 지도·점검

- 서울시는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 실시
-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·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

- 참여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

- 참여기업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(별첨 4)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지원중단, 부정수급액 환수,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 조치

● **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**

- 인턴기간이 종료된 경우,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업에 필요한 경력활용을 위하여 해당기업에서 「인턴경력 증명서」 발급 조치

● **매뉴얼 제작·배부**

- 참여기업과 인턴의 효율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청년인턴십 매뉴얼 제작·배부

**XI**      **홍보 계획**

● **온라인 홍보**

- 서울일자리플러스 홈페이지,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,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게재, 민간취업포탈 홍보
- 서울시정 뉴미디어 홍보매체(하이서울뉴스) 소셜네트워크(트위터, 페이스북) 등 활용

● **오프라인 홍보**

- 보도자료 제공(일간지 및 무가지)
- 서울시 업종별 단체, 유관기관, 특성화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 홍보협조

**XII**      **추진 일정**

구 분	일 정	비 고
청년인턴십 1차모집 공고	2.28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( <a href="http://job.seoul.go.kr">http://job.seoul.go.kr</a> )
참여기업 신청 접수	3.1(금) ~ 3.13(수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
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	3.21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기업별 채용공고 및 면접, 선발	3.21(목) ~ 4.29(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•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
인턴선발자 통보(기업→서울시)	3.21(목) ~ 4.29(월)	•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수시 통보(온라인)
인턴선발자 채용승인(서울시→기업)	1차: 3.29(금) 2차: 4.15(월) 3차: 4.30(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• 인턴선발자 승인처리(서울시)
인턴 근무개시(약정 체결)	1차: 4.1(월) 2차: 4.16(화) 3차: 5.1(수)	•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

- 별첨 1. 모집공고(안) 1부  
 2. 표준 인턴약정서 1부  
 3. 인턴지원협약서 1부  
 4.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부. 끝.

문서번호	창업취업지원과-1848
결재일자	2013.2.2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고용사업팀장	창업취업지원과장

# 2013년 무역인턴십 운영계획

경 제 진 흥 실  
(창업취업지원과)

# 2013 서울시 무역인턴십 운영계획

수출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대외무역 증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무역인턴십 추진하고자 함

## I 추진현황

### □ 추진근거

-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(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지원)
-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- 「2013년 중소기업 인턴십 등 고용지원 계획」 【창업취업지원과-1816('13.2.26)】

### □ 추진실적

- 운영실적(2012년) (단위 : 업체, 명)

기업	채용	인턴			정규직 전환	수료후 미전환	전환율	
		수료	중도탈락	근무			채용자 대비	수료자 대비
104	106	44	13	49	31	13	29.2%	70.5%

【구인·구직자간 기대수준 차이로 미스매칭 확대 심화】

(단위:업체, 명)

계획 목표	모집 승인		최종선발 (채용)	채용율	
	기업	인원		목표대비	승인대비
250	237	281	106	42.4%	37.7%

### □ 개선사항

항 목	2012년	2013년	변경사유
지원금	인턴 : 약정임금의 60% 정규직 : 약정임금의 50%	인턴 : 약정임금의 50% 정규직 : 약정임금의 70%	- 기업의 고용시장 유입 유도 -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 확보
지원기간	인턴 : 6개월 정규직 : 4개월	인턴 : 3개월 정규직 : 9개월	
자격요건 완화	① 토익 640, JPT 540, 신HSK 6급, 기타 동등 수준 보유자, ② 무역관련 전공 또는 경력자 <① 또는 ② 해당자>	기업 자체기준 적용 (자체 업무 적격자)	채용조건 완화에 따른 채용확대

## II

##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내용

- 사업명 : 서울시 무역인턴십
- 선발인원 : 250명
- 채용대상 : 만18세 이상 무역관련업 취업 희망자
- 대상기업 :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수출기업 또는 수출준비기업

#### ※ 제외대상

- 근로자파견업, 소비·향락업체, 다단계 판매업, 외근 영업직 등
- 전년도 참여실적 부진 기업(정규직 전환 저조, 중도탈락 다수 등)
-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 또는 기업  
(ex. 타 지원사업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- 사회적기업 등)

### ○ 지원내역

- 지원기간 : 12개월(인턴기간 3개월, 정규직전환 9개월)
- 지원금 :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%, 정규직 전환시 약정임금의 70%,  
월 최대 100만원 / 보장임금 : 월 140만원

### ○ 소요예산 : 1,080백만원



### Ⅲ 추진 방법

#### □ 참여기업 및 인턴선발

##### ○ 기업모집

-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기업모집(온라인 접수)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조회 후 참여기업으로 선발 공지
- 선발된 기업별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하여 인턴십 참여자 모집·선발
- 1차 모집 : 2013. 3. 1(금), 100명

##### ○ 기업선정기준

구 분	대상기업 및 선발기준
신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채용계획, 채용직무, 근로조건 등 심사</li> <li>- 고임금 기업, 채용직무 무역 관련성 정도 등 심사</li> </ul>
재참여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년도 무역서포터즈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우수기업</li> <li>- 장기 고용유지기업 우대</li> </ul>
배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년도 청년인턴, 무역인턴, 시니어인턴 등 정규직 전환 실적 부진기업 (협약위반 및 제재대상 기업, 중도탈락 50%이상 발생 기업)</li> </ul>

##### ○ 인턴선발

-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유관기관 인력풀을 활용한 채용알선
-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회원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채용

##### ○ 추진흐름도



## □ 인턴약정 및 인턴 관리(기업 ⇔ 인턴)

### ○ 인턴약정 체결

- 체결주체 : 참여기업 및 인턴
- 체결시기 : 참여기업에서 인턴 채용 결정 후
- 체결방법 : 표준 인턴약정서(서식 4)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체결
- 약정내용 : 근로시간, 장소, 임금 등 근로조건

### ○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

- 법적지위 :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
- 보험적용 : 참여기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턴에 대해 4대 보험 의무가입

### ○ 인턴 급여지급

- 급여의 명시 :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
- 급여 선지급 : 참여기업은 서울시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

### ○ 업무상 재해 인정

-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
- 다만,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 자동 해지

### ○ 근로조건

- 근무시간 :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,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 권장
- 가산임금 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
-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
  -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·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·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

## 인턴지원협약(서울시 ⇔ 기업)

### ○ 협약 체결

- 체결주체 : 서울시 및 참여기업
- 체결시기 : 참여기업과 인턴간 인턴약정서 체결 후
- 체결방법 : 표준 인턴지원협약서(서식 3)를 준거로 체결
- 협약내용 :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,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

### ○ 협약의 해지

- 참여기업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-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## 지원금 지급 및 관리

○ 지원금신청 :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기업별 신청

○ 지원방법 : 기업의 급여 선지급 확인 후 기업별 신청계좌로 지급

## 정규직 전환

○ 전환시점 :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

○ 정규직 인정범위 :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

※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권장

○ 정규직 전환 통보 및 기타 인사관리

- 참여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경우,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서울시에 제출
- 정규직 채용이후의 인사관리는 근로계약, 당해 실시기업의 취업규칙,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

## □ 직무교육 및 사후관리

○ 직무교육 : 1일 7시간

○ 사후관리

-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 실시
-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별 조치기준(별첨)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지원중단, 부정수급액 환수,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 제재 조치

## IV 행정사항

○ 무역 인턴십 사업 홍보

- 포털(네이버, 다음 등), 취업포털(사람인, 워크넷 등)에 배너 광고 게재
-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에 홍보 협조

○ 참여기업 모집·선정 및 채용자 선정

- '13년 3월부터 2개월 기간으로 모집 공고 : 총 5회 이상 실시

※ 채용실적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1개월 기간으로 추가모집 실시

**V**

**추진일정**

추진사항	일 정	비 고
1차모집 공고	2.28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참여기업 신청접수	3.1(금) ~ 3.13(수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
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	3.21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기업별 채용공고 · 선발 · 통보	3.21(목) ~ 4. 29(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• 선정기업별 채용 선발 및 통보
인턴선발자 채용승인	1차 3.29(금) 2차 4.15(월) 3차 4.30(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• 채용승인(서울시)
근무개시	1차 4.1(월) 2차 4.16(화) 3차 5.1(수)	• 채용기업별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

- 따로붙임 : 1. 모집공고문 1부**  
**2. 관련서식 1부**  
**3. 참여기업 유형별 제재기준 1부. 끝.**

**【별첨 1】**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- 호

## 2013년 서울특별시 무역인턴십 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인턴 모집 공고(1차)

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「서울특별시 무역인턴 사업」 과 관련하여 2013년 제1차 참여기업 및 무역인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2. 28

서울특별시장

**1. 인원 및 분야**

모집인원	모 집 분 야
100명	○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18세 이상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준비기업

**2. 참여자격**

구 분	신 청 자 격	제 외 대 상
기업	○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인이상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<u>수출기업 또는 수출준비기업</u> ○“상시근로자”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, “상시근로자 수”는 1개 사업장의 “ <u>고용보험 피보험자 수</u> ”로 함 ※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 (인턴십, 고용지원사업 등)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	○서울시 청년인턴십, 무역인턴, 시니어인턴십 등 협약위반 및 제재대상 기업 ○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○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 ○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○전년도 시니어 참여기업 중 정규직전환실적이 없는 기업, 중도탈락 50% 이상 기업 ○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(ex. 타 지원사업에 따라 별도 지원을 받는 기업 - 사회적기업 등)

구 분	신 청 자 격	제 외 대 상
인턴	○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	○서울시 중소기업 무역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○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※ 다만,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, 졸업예정자, 방송통신·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음 ○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○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○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,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

### 3. 기업선정 기준

구 분	대상기업 및 선발기준
신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채용계획, 채용직무, 근로조건 등 심사</li> <li>- 고임금 기업, 채용직무 무역 관련성 정도 등 심사</li> </ul>
재참여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년도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우수기업</li> <li>- 장기 고용유지기업 우대</li> </ul>
배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청자격 제외대상 기업(상기 기업 참여자격 제외대상 참조)</li> <li>■ 시니어 및 청년인턴십 등 시지원사업 실적부진 기업 (정규직전환 부진 기업, 협약위반 및 감원 등 제재대상 기업, 중도탈락 다수 발생 기업)</li> <li>■ 사회적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역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무역인턴 관련 지원 중단</li> </ul> </li> </ul>

### 4. 지원조건

지원인원 : 상시 근로자 수의 20% 이내로 하되,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

※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(인턴십, 고용지원사업 등)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

※ 중복지원 배제 :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, 서울시(자치구), 인턴십 및 고용지원 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(통합지원 한도 적용)

- 예시 :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 (20%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)

☞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,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(총 2명) ⇒ **신청 가능인원 0명**

□ 지원기간 : 채용일로부터 최장 12개월(인턴기간 3개월, 정규직전환 9개월)

□ 인건비 및 직무교육 지원

○ 임 금 : 최저 월 140만원 이상(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)

○ 지 원 금

- 인턴기간 : 약정임금의 50% / 최대 월100만원 / 3개월

- 정규직 전환시 : 약정임금의 70% / 최대 월100만원 / 9개월

※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산정시 약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음

○ 근무시간 :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(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)

○ 연장근로, 휴게시간,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, 당해기관의 단체협약,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

○ 직무교육(의무교육) : 서울시 주관 직무교육 1일 7시간

## 5. 세부 추진절차

①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: 2013. 3.. 1(금) ~ 3. 13(수)

○ 신청방법 : 인터넷 접수 『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<http://job.seoul.go.kr>』

※ 홈페이지 [고객센터] → [지원사업공고] → [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공고] → [지원하기] → [참여기업 신청서 작성] → [제출하기]

※ 비회원의 경우 기업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(731-9540), 기업회원가입 담당승인(02-731-9533) 후 참여기업 신청

○ 증빙서류 제출

-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업체 주요현황(회사·사업소개, 매출·해외마케팅 실적 등), 수출실적 증빙서류(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 발급) 각 1부

※ 수출 준비기업 : 수출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증빙자료(수출계약서, 신용장 사본 등)

- 제출방법 : 이메일 [seoulintern@seoul.go.kr](mailto:seoulintern@seoul.go.kr) / PDF나 JPG로 변환하여 송부

※ **참여기업 신청서 접수기한내에 증빙서류 미제출시 선정기업에서 제외**



② 선정기업 발표 : 2013. 3. 21(목)

○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[공지사항] 게시

③ 선정기업별 무역인턴 선발 : 2013. 3. 21(목) ~ 2013. 4. 29(월)

① 『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』를 통해 채용공고 (선정기업)

※ 홈페이지 [구인신청관리] 또는 [기업서비스]-[구인신청]에서 구인포 작성 - 사업구분 [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선정기업 공고] 선택 → 구인신청 요청

② 기업별 지원자 면접 및 선발

③ 무역인턴 선발 후 서울시에 명단 통보 (선정기업 → 서울시)

※ 홈페이지 [기업서비스] → [지원사업] → [선발자통보] → [인턴이름 등 입력] → [통보]

④ 무역인턴십 지원자 신청 : 2013. 3. 21(목) ~ 2013. 4. 29(월)

①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

② 기업별 채용공고 확인 후 희망기업 선택 지원 : 2013. 3. 21(목) ~ 2013. 4. 29(월)

※ [채용정보](사업별) → 사업구분 [2013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선정기업 공고] 선택 → [희망기업 선택] → 온라인지원 / 알선요청

⑤ 무역인턴 적격여부 심사 및 채용승인(서울시) : '13. 3. 29(금) ~ '13. 4. 30(화)

⑥ 근무개시 : 서울시에서 기업별 인턴선발자 채용승인후

※ 채용승인후 기업-인턴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개시 가능

## 6. 진행일정

추진사항	일 정	비 고
1차모집 공고	2.28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참여기업 신청접수	3.1(금) ~ 3.13(수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
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	3.21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기업별 채용공고·선발·통보	3.21(목) ~ 4.29(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• 선정기업별 채용 선발 및 통보
인턴선발자 채용승인	1차 3.29(금) 2차 4.15(월) 3차 4.30(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• 채용승인(서울시)
근무개시	1차 4.1(월) 2차 4.16(화) 3차 5.1(수)	• 채용기업별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

## 7. 유의사항

- 채용기업은 무역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.
- 무역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「중소기업 무역인턴십 지원협약서」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.
-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  - 1)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(임금수준 등)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  - 2)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
  - 3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 - 4)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

## 8. 문의처 및 홈페이지

- 회원가입, 참가신청,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
  -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(☎ 02-731-9531~3, 9535)
- 무역 인턴십 관련 문의
  -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(☎ 02-2133-5518)
- 홈페이지 : 『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<http://job.seoul.go.kr>』

문서번호	창업취업지원과-1850
결재일자	2013.2.2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시 민		
주무관	고용사업팀장	창업취업지원과장

## 2013년 시니어인턴십 운영계획

2013. 2.

경 제 진 흥 실  
(창업위업지원과)

# 2013년 시니어 인턴십 운영계획

고령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령실업 해소와 시니어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시니어 인턴십을 추진하고자 함

## I 추진현황

### □ 추진방향

- 고령인구 증가 및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속 창출
- 지원방식 변경(지원기간 연장, 지원금 조정) 등 인턴십 운영방법 개선으로 고용의 안전성 확보

### □ 추진실적

- 운영실적(2012년) (단위:업체, 명)

인턴					정규직 전환	수료후 미전환	전환율	
기업	채용	수료	중도탈락	근무			채용자 대비	수료자 대비
93	117	79	3	35	60	19	51.2%	75.9%

### 【구인·구직자간 기대수준 차이로 미스매칭 확대 심화】

(단위:업체,명)

계획 목표	모집 승인		최종선발 (채용)	채용율	
	기업	인원		목표대비	승인대비
300	202	319	117	42.4%	37.7%

### □ 개선사항

구분	2012년	2013년	변경사유
지원금	인턴: 약정임금의 60% 정규직: 약정임금의 50%	인턴: 약정임금의 50% 정규직: 약정임금의 70%	- 기업의 고용시장 유입 유도 -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 확보 - 기업의 인턴 모집범위 확대로 인턴채용 촉진
지원기간	인턴: 3개월 정규직: 3개월	인턴: 3개월 정규직: 9개월	
인턴 모집대상	50대와 60대 구분하여 모집 ※ 60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에서 모집·지원·관리	50대 이상으로 통합하여 모집	

## II

##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내용

○ 사업명 : 서울시 시니어 인턴십

○ 선발인원 : 500명

○ 대상기업 :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
#### ※ 제외대상

- 경비, 청소, 요양보호사, 음식점서빙, 근로자파견업, 소비·향락업체
- 다단계 판매업, 외근영업직,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및 단순노무용역업
- 전년도 시니어인턴십 참여실적 부진 기업(정규직 전환 저조, 중도탈락 다수 등)
-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 또는 기업

(ex. 타 지원사업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- 사회적기업 등)

○ 채용대상 : 서울시 거주 50세 이상 미취업자 또는 전직희망자

※ 『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2조  
준고령자(50~55세) 및 고령자(55세 이상)

○ 지원내용 : 지원기간 12개월(인턴기간 3개월, 정규직전환 9개월)

-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%, 정규직 전환시 약정임금의 70%

- 임 금

- 50대 : 최저 월 140만원 이상(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)
- 60대 이상 : 최저 월 102만원 이상('13년도 최저임금 적용)

○ 소요예산 : 1,585백만원

○ 추진방법 :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 추진

-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모집·운영·관리하는 60대 시니어 인턴십과  
추진 병행(시는 취업알선)

### Ⅲ 추진 방법

#### □ 참여기업 및 인턴선발

##### ○ 기업모집

-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기업모집(온라인 접수)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조회 후 참여기업으로 선발 공지
- 선발된 기업별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하여 인턴십 참여자 모집·선발
- 1차 모집 : 2013. 3. 1(금), 100명

##### ○ 기업 선정 기준

- 2012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: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
  - 전년도 정규직 전환실적이 없거나 중도탈락율 50% 이상기업 참여금지
- 신규 참여기업 : 근로조건 우수기업
  - 급여수준, 채용직무, 운영계획 등 심사

##### ○ 인턴선발

-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알선 또는 직접 선발
-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회원 미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채용

##### ○ 추진흐름도



## □ 인턴약정 및 인턴 관리(기업 ⇔ 인턴)

### ○ 인턴약정 체결

- 체결주체 : 참여기업 및 인턴
- 체결시기 : 참여기업에서 인턴 채용 결정 후
- 체결방법
  - 표준 인턴약정서(서식 4)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체결
- 약정내용 : 근로시간, 장소, 임금 등 근로조건

### ○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

- 법적지위 :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
- 보험적용
  - 참여기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턴에 대해 4대 보험 의무가입

### ○ 인턴 급여지급

- 급여의 명시 :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
- 급여 선지급
  - 참여기업은 서울시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

### ○ 업무상 재해 인정

-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
- 다만,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 자동 해지

## ○ 근로조건

### - 근무시간

-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,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 권장

### - 가산임금

-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

### -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

-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·취업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,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·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

## □ 인턴지원협약(서울시 ⇔ 기업)

### ○ 협약 체결

- 체결주체 : 서울시 및 참여기업
- 체결시기 : 참여기업과 인턴간 인턴약정서 체결 후
- 체결방법 : 표준 인턴지원협약서(서식 3)를 준거로 체결
- 협약내용 :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,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

### ○ 협약의 해지

- 참여기업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-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

## □ 지원금 지급 및 관리

- 지원금신청 :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기업별 신청
- 지원 방법 : 기업의 급여 선지급 확인 후 기업별 신청계좌로 지급

## □ 정규직 전환

- 전환시점 :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
- 정규직 인정범위 :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

※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권장

### ○ 정규직 전환 통보 및 기타 인사관리

- 참여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경우,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서울시에 제출
- 정규직 채용이후의 인사관리는 근로계약, 당해 실시기업의 취업규칙,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

## □ 직무교육 및 사후관리

### ○ 직무교육 : 1일 7시간

### ○ 사후관리

-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 실시
-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별 조치기준(별첨)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, 경고, 지원중단, 부정수급액 환수,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 제재 조치

## IV 행정사항

### ○ 시니어 인턴십 사업 홍보

- 포털(네이버, 다음 등), 취업포털(사람인, 워크넷 등)에 배너 광고 게재
-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중앙회, 노사발전재단 등 관련 기관에 홍보 협조

### ○ 참여기업 모집·선정 및 채용자 선정

- '13년 3월부터 2개월 기간으로 모집 공고 : 총 5회 이상 실시

※ 채용실적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1개월 기간으로 추가모집 실시

## V 추진일정

추진사항	일 정	비 고
1차모집 공고	2.28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참여기업 신청접수	3.1(금) ~ 3.13(수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
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	3.21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기업별 채용공고·선발·통보	3.21(목) ~ 4. 29(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• 선정기업별 채용 선발 및 통보
인턴선발자 채용승인	1차 3.29(금) 2차 4.15(월) 3차 4.30(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• 채용승인(서울시)
근무개시	1차 4.1(월) 2차 4.16(화) 3차 5.1(수)	• 채용기업별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

따로붙임 : 1. 모집공고문 1부

2. 관련서식 1부

3. 참여기업 유형별 제재기준 1부. 끝.

**【별첨 1】**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- 호

2013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 
**참여기업 및 인턴모집 공고(1차)**

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3년 「서울특별시 시니어 인턴십 사업」과 관련하여  
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2. 28

서울특별시장

**1. 인원 및 분야**

모집인원	모 집 분 야
100명	○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50세 이상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

**2. 신청자격**

구 분	신 청 자 격	제 외 대 상
〈기업〉	○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니어인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 ○ “상시근로자”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, “상시근로자 수”는 <u>1개 사업장의 “고용보험 피보험자 수”</u> 로 함 ※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 (인턴십, 고용지원사업 등)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서울시 청년인턴십, 무역인턴십, 시니어인턴십 등 협약위반 및 제재대상 기업</li> <li>■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</li> <li>■ 요양보호업, 경비·청소·주차관리 등 시설관리 업종</li> <li>■ 주유소, 편의점, 마트캐셔, 음식점 서빙·배달, 운송, 도시가스 및 케이블방송 검침 등 기타 단순 노무 등</li> <li>■ 소비·향락 업종(단란주점 등)</li> <li>■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(용역업체 등) ※ 단, 본사 인턴근무는 가능</li> <li>■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</li> <li>■ 전년도 시니어 참여기업 중 정규직전환실적이 없는 기업, 중도탈락 50% 이상 기업</li> <li>■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(사회적 기업 등)</li> </ul>

구 분	신 청 자 격	제 외 대 상
<인턴>	○ 채용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50세 이상 취업 희망자 ex) 채용일이 2013.01.01인 경우 1963.01.01 이전 출생자	<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 제한> ○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, 취업,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○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

### 3. 기업 선발 기준

구 분	대상기업	선발기준
1순위	■ 고용유지 우수기업	■ 전년도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중 정규직 전환 후 공고일 현재 고용유지자가 많은 기업 순
2순위	■ 신규 참여기준	■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한 적이 없는 기업 중 - 고임금 제시기업 우대
제외대상	■ 신청자격 제외대상(상기 기업 신청자격 제외대상 참조) ■ 시니어 및 청년인턴십 등 시지원사업 실적부진 기업 (정규직전환 부진 기업, 협약위반 및 감원 등 제재대상 기업, 중도탈락 다수 발생 기업) ■ 사회적 기업 등 인건비 기타 지원사업 참여기업 -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시니어 관련 지원 중단	

### 4. 지원인원

- 상시근로자 수의 30% 이내로 하되,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원칙
- ※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(인턴십, 고용지원사업 등)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
- 중복지원 배제 :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, 서울시(자치구), 인턴십 및 고용지원 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(통합지원 한도 적용)
- 예시 :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 (30% 범위내 최대 3명 신청가능)
- ☞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,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(총 2명) ⇒ 신청 가능인원 0명

### 5. 지원기간

- 채용일로부터 3개월 /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추가

### 6. 임금 및 지원금

- 가) 50대 시니어
- 임 금
- 50대 시니어 : 최저 월 140만원 이상(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)

○ 지원금

- 인턴기간 : 약정임금의 50% / 최대 월100만원 / 3개월
- 정규직 전환시 : 약정임금의 70% / 최대 월100만원 / 9개월

나) 60대 시니어

○ 임금

- 60대 시니어 : 최저 월 102만원 이상(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)

○ 지원금

- 인턴기간 : 약정임금의 50% / 최대 월100만원 / 3개월
- 정규직 전환시 : 약정임금의 70% / 최대 월100만원 / 9개월

【50, 60대 공통사항】

-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(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)
- 연장근로, 휴게시간,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, 당해기관의 단체협약,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
-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산정시 약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음

## 7.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3. 3. 1(금) ~ 3. 13(수)

- 신청방법

- 인터넷 접수 :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(<http://job.seoul.go.kr>)

※ 홈페이지 [고객센터] - [지원사업공고] - [2013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참여기업 공고] - [지원하기] - [참여기업 신청서 작성] - [제출하기]

※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(02-731-9540) 송부, 기업회원가입 담당승인 (02-731-9533) 후 참여기업 신청

## 8.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: 2013. 3. 21(목)

-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(<http://job.seoul.go.kr>) 공지사항 게시

## 9.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

가)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(<http://job.seoul.go.kr>)를 통해 채용공고

※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로그인 후 [구인신청관리] 또는 [기업서비스]-[구인신청] 에서 구인표작성 - 사업구분(2013년 서울시 시니어 인턴 참여기업 공고) 선택 - 구인신청 요청

- 나)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기업별 지원자 면접 및 인턴 선발
- 다)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(<http://job.seoul.go.kr>)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
  - ※ [기업서비스] - [지원사업] - [선발자통보] - [이름, 주민등록번호 입력] - [통보]
- 라)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선발자 승인 처리
- 마) 서울시에서 기업별 인턴선발자 채용승인후 인턴채용자 근무개시(기업-인턴 약정체결)
- 바) 시니어인턴 직무교육 실시(의무교육 - 1일 7시간)

## 10.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

- 가)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
- 나) [채용정보](사업별) - 사업구분[2013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선정 기업공고] 선택 - [희망기업 선택]
  - 온라인지원/알선요청

## 11. 진행일정

추진사항	일 정	비 고
1차모집 공고	2.28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참여기업 신청접수	3.1(금) ~ 3.13(수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
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	3.21(목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
기업별 채용공고·선발·통보	3.21(목) ~ 4. 29(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• 선정기업별 채용 선발 및 통보
인턴선발자 채용승인	1차 3.29(금) 2차 4.15(월) 3차 4.30(화)	•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• 채용승인(서울시)
근무개시	1차 4.1(월) 2차 4.16(화) 3차 5.1(수)	• 채용기업별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

## 12. 유의사항

- 가)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·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.
- 나)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「시니어인턴 지원협약서」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.
- 다)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

- 1)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
- 2)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,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3)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

### 13. 문 의 처

가) 회원가입, 참가신청, 결과통보 등 온라인 입력방법 문의

-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(☎ 02-731-9531~3, 9535)

나) 시니어 인턴십 관련 문의

-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(☎ 02-2133-5518)

<b>책 자 명</b>	2013년도 정책자료집 (중소기업인턴십)
<b>발 행 일</b>	2014. 2.
<b>발 행 처</b>	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
<b>참 여 자</b>	○ 창업취업지원과장 : 이방일 ○ 고용사업팀장 : 백종문 ○ 담당자 : 김관호, 이효진, 박병수
<b>편 집</b>	행정7급 이효진 (☎2133-5519)